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심의 회의결

안 건 번 호 제2022-019-158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 :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2. 11. 30.

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운영하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(이하 '보 호법'이라 한다.)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주소	종업원 수 (명)

Ⅱ. 사실조사 결과

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(privacy.go.kr)에 유출 신고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2. 행위 사실

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피심인은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.

< 개인정보 수집현황 >

구분	항목	수집일	건수(건)
회원정보	(필수) (선택)		(유효) (분리)
	계		

나. 개인정보 유출 경위

1) 유출 경과 및 대웅

일시		피심인의 유출인지·대응 내용		
		공식 커뮤니티에 데이터 이상 관련 게시물 확인		
		서버 부하 문제로 추정되어 데이터베이스 재가동		
		관련 민원 재접수		
		시스템 분석 결과 인증 정보 오류 확인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인지		
		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신고		

2) 유출규모 및 경위

(유출항목 및 규모) 이용자 명의 이름·이메일·연락처·주소

(유출 경위) 피심인은 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공개용 라이브러리(library)를 이용하였는데 해당 라이브러리 오류로 이용자가 로그인 시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아닌 직전에 로그인한 다른 이용자의 정보를 전송하여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함

3. 개인정보의 취급.운영 관련 사실관계

가.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데이터 전송 오류로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

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. 8. 31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같은 해 9. 13.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관련법 규정

가.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'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'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, 2021. 9. 15., 이하 '고시'라 한다.) 제4조제9항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

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2. 위법성 판단

가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{보호법 제29조 (안전조치의무)}

피심인이 이용한 공개용 라이브러리에 대해 소스코드 수정이나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,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.

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위반행위	법률	시행령	세부내용(고시 등)		
안전조치의무 위반 (접근통제)	§29	§48조의2①	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(고시§4⑨)		

Ⅳ. 처분 및 결정

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 제6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(별표2)'과태료 부과기준' 및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2021. 1. 27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,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.

<「보호법」시행령 [별표2] 2. 개별기준 >

(단위:만원)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ਜ ਦ ^ 8	L/IUS	1회	2회	3회 이상
자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번 제75조	600	1,200	2,400

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1) (과태료의 감정)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[별표1]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,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%인 만원을 감경한다.

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.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행위(세부내용)	기준금액	가중액	감경액	최종 과태료
안전조치의무 위반 (접근통제)		-		

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 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2022년 11월 30일

부위원장 최장혁 (서명) 위 원 강 정 화 (서 명) 위 고 성 학 (서 명) 원 백 대 용 위 (서 명) 원 (서 명) 위 원 서 종 식 위 원 염 흥 열 (서 명) (서 명)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지성우 (서명)